

평창군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
----------	----

제출년월일 : 2003. 1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에서는 2004년중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강력 요구
- 조세수입에 의한 일반회계의 부담만으로는 수질개선과 시설비 투자에 한계가 있으며
- 1차년도 결산감사 결과 총괄원가 4,459백만원, 급수수익1,480백만원으로 결손액 2,979백만원으로 인상요인 201%에 요구되며
- 톤당 생산원가는 2,261원인데 비하여 요금은 톤당 750원으로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 3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경영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상수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수도 사용자 인상이 불가피한바 평창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03.7.25일)를 거쳐 2004년 1월 상수도 요금부터 평균톤당 38%인상 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급수조례 제26(요금) ①요금 [별표2] 의 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수도법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필요없음
-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 완료
- 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바. 기타 : 평창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자치법규심사 심의완료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중 **【별표2】**를 별지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업종별요율표

업종별	월기본료		초과요금		비고
	용량 (단위:m ²)	금액 (단위:원)	용량 (단위:m ²)	금액 (단위:원)	
가정용	0 ~ 10	3,800	11~20	690	
			21~30	860	
			31~40	1,020	
			41~50	1,060	
			51이상	1,590	
업무용	0 ~ 20	19,460	21~50	1,390	
			51~100	1,740	
			101~300	2,000	
			301이상	2,140	
영업용	0 ~ 30	29,670	31~50	1,460	
			51~100	1,810	
			101이상	2,330	
옥 탕 용	1종 0 ~ 200	294,980	201~300	1,930	
			301~500	2,280	
			501이상	3,080	
	2종 0 ~ 200	294,980	201~300	3,110	
			301~500	4,240	
			501이상	5,090	
전용공업용	m ² 당	8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업종별	월기본료		초과요금		업종별	월기본료		초과요금	
	용량 (단위:m ²)	금액 (단위:원)	용량 (단위:m ²)	금액 (단위:원)		용량 (단위:m ²)	금액 (단위:원)	용량 (단위:m ²)	금액 (단위:원)
가정용	0 ~ 10	2,750	11~20	500	가정용	0 ~ 10	3,800	11~20	690
			21~30	620				21~30	860
			31~40	740				31~40	1,020
			41~50	770				41~50	1,060
			51이상	1,150				51이상	1,590
업무용	0 ~ 20	14,100	21~50	1,010	업무용	0 ~ 20	19,460	21~50	1,390
			51~100	1,260				51~100	1,740
			101~300	1,450				101~300	2,000
			301이상	1,550				301이상	2,140
영업용	0 ~ 30	21,500	31~50	1,060	영업용	0 ~ 30	29,670	31~50	1,460
			51~100	1,310				51~100	1,810
			101이상	1,690				101이상	2,330
욕탕용	1종 0 ~ 200	213,750	201~300	1,400	1종 욕탕용	0 ~ 200	294,980	201~300	1,930
			301~500	1,650				301~500	2,280
			501이상	2,230				501이상	3,080
	2종 0 ~ 200	213,750	201~300	2,250	2종 욕탕용	0 ~ 200	294,980	201~300	3,110
			301~500	3,070				301~500	4,240
			501이상	3,690				501이상	5,090
전용공업용	m ² 당	580			전용공업용	m ² 당	800		

관계법령발췌서

수도법

제23조(공급규정)

일반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인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명창군수도공수조례

제26조(요금) ①요금은 [별표2]의 요금표에 의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각호의 1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